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31

발의연월일: 2021. 2. 4.

발 의 자: 강훈식 · 고영인 · 김윤덕

송갑석 • 위성곤 • 유동수

이광재 · 이규민 · 이용빈

장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 후 살해된 사건이 있었음.

현행법상 혼외자의 경우 친모인 미혼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미혼부의 경우 그 신고의 주체가 되지 못하여 미혼모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하는 출생통보제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의사 등 분만에 관여한 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를 하고 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여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함(안 제제44조의3부터 제 44조의5까지).

나. 미혼부의 친생자 인지를 위한 출생신고의 요건을 모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하여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안 제57조).

법률 제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4조의3(출생의 통보) ①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이 조에서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출생통보서(의사·조산사의 경우 출생증명서, 의사·조산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출생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통보서의 제출 및 송부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그 밖에 출생통보서의 제출, 송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 제44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이를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출생통보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44조의5(출생신고 미신고 조사 등)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출생통보

서를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출생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것을 최고하거나 제46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7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알"을 "주민등록번호 등을 종합하여 모를 특정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4조의3(출생의 통보) ① 분만
	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이 조에서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출생통보서(의사·조산
	사의 경우 출생증명서, 의사·조
	산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의 경우 출생사실을 증명
	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
	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출생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u>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
	생통보서의 제출 및 송부는 전
	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
	자문서로 할 수 있고, 그 밖에
	출생통보서의 제출, 송부 등에

<신 설>

<신 설>

한 인지) ① (생 략)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 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 제44 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은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제44 조의3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출생통보서와 대조하여 확인하 여야 한다.

제44조의5(출생신고 미신고 조사 등)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출 생통보서를 송부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출 생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 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것을 최고하 거나 제46조제4항에 따른 절차 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 한 인지) ① (현행과 같음)

(2)				
<u>주</u> 답	민등록번호	등을	종합하여	모
를	특정할			

고를 할 수 있다.	
	<u>.</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